

의안번호	2210313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6.23.
추 계 번호	25B2752

돌봄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돌봄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에 대한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제2항) 1.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돌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이용자 가족(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돌봄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1조(근로시간 단축의 예고 등)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전 30일간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국가등은 30일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휴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13조(적정임금의 보장 등)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노동자의 기본 시간급(時間給)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8조(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알선·제공 등 지원)	국가등은 돌봄노동자에게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알선·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9조(휴게)	사용자는 시설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방문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방문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제1항의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21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돌봄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26조(통보 의무)	국가등과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임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1조(근로시간 단축의 예고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3	안 제13조(적정임금의 보장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기본시간급(時間給)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8조(휴가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알선·제공 등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5	안 제19조(휴게)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6	안 제21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7	안 제26조(통보의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등과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안 제11조) 제정안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 하여금 휴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휴업수당을 ‘30일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유동적이며,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휴업수당 지급대상자의 규모와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안 제18조) 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¹⁾, 안전휴가²⁾, 질병휴가³⁾를 주도록 규정하고, 국가등은 돌봄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알선·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등이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의 알선·제공을 목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재정사업의 내용 및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19조) 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 돌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국가등은 돌봄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말함(안 제15조제1항)

2) 안전휴가란, 돌봄노동자가 근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걸리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돌봄노동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돌봄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 주는 휴가를 말함(안 제16조)

3) 질병휴가란, 돌봄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주는 휴가를 말함(안 제17조)

-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등이 돌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재정사업의 내용 및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21조)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안 제21조제1항), 돌봄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안 제21조제2항) 내용임
- 제정안의 시행으로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시책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돌봄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치료·재활 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